#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0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전진숙·김선민·임호선

이기헌 • 박희승 • 김 윤

김원이 · 남인순 · 김남희

김정호 · 김윤덕 · 권칠승

윤후덕 • 이용우 • 서영석

정준호 • 이훈기 • 양부남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나, 관련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상당수가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고 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로 추진한 바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고 함.

이에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제2호·제3호). 법률 제 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부인과"를 각각 "여성의학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2
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	
아청소년과 · <u>산부인과</u> 중 3개	<u>여성의학과</u>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	
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	
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	
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3
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u>산부인과</u> , 영상의학과, 마취통	- <u>여성의학과</u>
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	
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	
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